

2016년

한부모가족 주거자금 무이자 소액대출사업 (전국사업)

나는 가장이다



사업명

2016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「나는 가장이다」

대출내용

-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: 1세대당 최대 5백만원(단, 신용회복중인 세대 최대 3백만원), 무이자 임차보증금 대출
※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**상향 조정된 임차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**

예) 대출 가능 금액 : (신규 또는 재계약 후 임차보증금)750만원 - (기존 임차보증금)500만원 = 250만원 대출 가능
⇒ **기존 계약서와 신규(재) 계약서를 비교하여 상향된 금액 확인**

- 상환 방법 및 상환금액 :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상환

- | | |
|--|--|
| 1) 3백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5만원 분할 상환 | 2) 3백만원 초과~3백5십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|
| 3) 3백5십만원 초과~4백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7만원 분할 상환 | 4) 4백만원 초과~4백5십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|
| 5) 4백5십만원 초과~5백만원 이하 대출 :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| |

- 대출지급규모 : 총 000세대

- 임대차계약 조건 :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

- 1차 신청 및 접수 : 2016. 01. 01.(금) ~ 06. 30.(목) 이내 신규 또는 재계약 진행 (예정포함, 잔금지급일은 '16. 07. 31 이전)
- 2차 신청 및 접수 : 2016. 04. 01.(금) ~ 09. 30.(금) 이내 신규 또는 재계약 진행 (예정포함, 잔금지급일은 '16. 10. 31 이전)
- 3차 신청 및 접수 : 2016. 07. 01.(금) ~ 12. 30.(금) 이내 신규 또는 재계약 진행 (예정포함, 잔금지급일은 '17. 01. 31 이전)
- ※ 소급적용 : 2016년 이전 신규 또는 재계약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2016. 01. 01 이후이면 대출 신청 가능(단, 1차 신청접수 한함)

신청대상

-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가장

- ① 만 18세 이하(취학시 만 22세 이하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(1998. 01. 01. 이후 출생자)
- ② 임차보증금 보유 기준 : 대도시 5,400만원 이하/ 중소도시 3,400만원 이하/ 농어촌 2,900만원 이하
※ 대도시 : 특별시, 광역시의 "구"(도농복합 "군" 포함) / 중소도시 : 도의 "시"와 특별자치시·도 / 농어촌 : 도의 "군"

가구원 수	소득기준 (단위 : 원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단위 : 원)			비 고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 합	
2인	1,992,000	61,126	45,046	61,200	-
		65,130	47,997	65,209	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
3인	2,577,000	79,373	77,935	80,113	-
		84,572	83,040	85,360	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
4인	3,162,000	96,971	102,794	98,024	-
		103,323	109,527	104,445	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대출 불가 세대

- ※ 아래 4가지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
- ※ 대출불가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, 향후 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한 받을 수 있음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●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, 상가(점포), 사무실,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 | ●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(민법상 대출 불가) |
| ●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| ● 신용관리대상자 |

〈※ 2016년 시행〉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 두 조건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지급 가능

- ① 신용회복위원회(타기관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)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(개인별 신청일자 기준) 성실상환 중인 세대
-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

사업일정

※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될 시 홈페이지 공지)

구분	일정	비고
1	대출 신청 서류 접수 (3회 시행) • 1차 : 2016. 04. 04.(월) ~ 04. 22.(금) • 2차 : 2016. 06. 27.(월) ~ 07. 15.(금) • 3차 : 2016. 09. 26.(월) ~ 10. 14.(금)	※ 대출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유효(사전접수 불가) ※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소인 유효 ※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이메일(hanbumohouse@naver.com) 발송 필수 - 서식1 : 총괄표는 엑셀 파일 원본 발송 -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으로 파일 전환 후 발송
2	대출 가능 대상자 발표 • 1차 : 2016. 05. 20.(금) • 2차 : 2016. 08. 16.(화) • 3차 : 2016. 11. 11.(금)	※ 신청기관에 대출 가능 대상자 선정 안내 공문 발송 예정 ※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출 가능 대상자 발표 예정 홈페이지 : www.seoulhanbumo.or.kr
3	대출 약정 서류 접수 • 대출 약정 구비 서류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대출 가능 대상자 발표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※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대상으로 선정된 후 대출 약정 서류 제출 필수 ※ 대출 신청 서류 접수와 동일하게 신청기관에서 대출 약정 구비 서류를 취합하여 발송	
4	대출금 입금 • 대출 약정 서류 중 주거 계약 관련 서류 내용 확인 후 일정에 맞춰 대출금 입금 ☞ 1차 6월중, 2차 9월중, 3차 12월중 입금 예정	
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| 접수방법 |

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서류 취합 후 접수 기한 내에 이메일 및 등기우편 발송
※ 추후 대출 가능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 약정 서류도 신청기관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에 제출

| 접수처 |

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(구로동) 강서수도민원센터 2층(우, 08302)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'2016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' 담당자 앞

| 제출서류 |

구분	내용	비고	
필수 서류	신청 기관 • 서식1 : 신청기관 총괄표(엑셀) 1부 • 서식2 : 신청기관 신청서(한글) 1부	• 홈페이지 다운로드	
	신청자	• 서식3 : 대상자 신청서 / 개인정보 동의서 1부	• 홈페이지 다운로드
		• 서식5 : 상환계획서	• 홈페이지 다운로드
		•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	• 주민센터, 인터넷
		• 현 거주지 임차(전·월세, 임대주택 등)계약서 사본 1부 예1) 무료임차인 경우 : '서식4' 서류 대체 예2) 시설거주자 : 시설입소 확인서 대체 예3)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된 상태에서 대출 신청시 ⇒ 신. 계약서 사본 별도 제출 (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함)	• 임차거주 (계약서 사본) • 무료임차 (서식4, 홈페이지) • 시설거주 (시설 담당자) • 주민센터 (확정일자)
• 소득증빙서류 (3중 택1) 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• 기준 중위소득 50%초과 ~ 52%이하 • 기준 중위소득 52%초과 ~ 72%이하	- 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1부 - 한부모가족 증명서 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	• 주민센터, 인터넷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(☎ 1577-1000)	
해당자 한함	신청자 • 청약저축 확인서 1부(거래내역서 또는 거래실적 증명서) • 장애인증명서 1부(가구원 중 1~3급인 경우) 신용회복 대상자 •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, 채무조정 합의서(사본) 각 1부	★ 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 사항 • 청약 저축 거래 은행 발급 • 주민센터, 인터넷 • 신용회복위원회 발급	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(이메일발송 포함) 대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대출 진행 기본 원칙

심사의 원칙	• 대출을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
대출 사업 원칙	• 이미 대출을 지급 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 (형평성 고려)
협력지원의 원칙	•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(개인신청 불가) •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,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

문의

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팀 ☎ 070-7475-3018

※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